

#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85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1년 월 일

발 의 자 : 김영길 · 고희근 · 황세영 · 이효상  
· 서경환 · 김순점 의원(6명)

## 1. 개정사유

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으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중구의회 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제6조(상임위원장) 및 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의 일부조문 변경
  - ▶ ③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위원중에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⇒ 최다선 의원이
- 법령정비 기준 적용

## 3. 근거법규

- 지방자치법 제54조(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)

## 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따로붙임

##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3항 중 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”를 “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”로 한다.

제8조 제2항 중 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”를 “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상임위원장) ③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위원중에 <u>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	<p>제6조(상임위원장) ③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위원중에 <u>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</u>  <u>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
<p>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위원중 <u>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	<p>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위원중 <u>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</u></p>

# 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850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2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1. 10. 7(금)

나. 제안자 : 김영길 의원 외 5명

다. 위원회 회부 : 2011. 10. 13(목)

라. 위원회 심사 : 2011. 10. 14(금)

## 3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영길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으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제6조(상임위원장) 및 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의 일부조문 변경
  - ▶ ③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위원중에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⇒ 최다선 의원이

## 4.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 제54조(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)

## 5. 검토의견 (전문위원 배청숙)

- 지방자치법 개정(2011.7.14 공포, 2011.10.15 시행)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였으므로 개정함이

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